

5. 제9장(정부조달) 및 부속서 9(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9장 정부조달

제9.1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GPA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서, 그리고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계속 협력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GPA**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서명되고, 2012년 3월 3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며, 수시로 더 개정될 수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을 말한다.

3. 모든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GPA의 규정을, 이 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GPA 및 GPA 부록 1의 각 당사국 부속서(주해와 각주를 포함한다)는 다음을 제외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일부가 된다.

가. GPA 제4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그 밖의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나. GPA 제5조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다. GPA 제7조제2항타호에 규정된 대로 조달예정공고에 해당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할 의무

라. GPA 제8조제2항에 규정된 대로 참가조건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어느 한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받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사전 작업 경험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때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 GPA의 약속에 추가하여 이 장에서 합의된 약속과, 제9.2조제1항나호에 정의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GPA 제20조에 규정된 협의 및 분쟁해결

바. GPA 제21조에 규정된 기구, 그리고

사. GPA 제22조에 규정된 최종 규정

4. 제 3 항에 따라 이 장에 GPA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상,

가. GPA의 “협정”이란 “장”을 말하고 “이 협정의 당사국”이란 “당사국”을 말한다.

나. GPA의 “그 밖의 당사국들”, “다른 당사국”, “다른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또는 “그 밖의 모든 당사국”이란 “다른 쪽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다. GPA의 “위원회”란 “작업반”을 말한다.

제9.2조

적용범위

1. 제 2 항을 조건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다음과 같다.

가. 그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여, GPA 부록 I의 각 당사국 부속서 및 그에 따

른 주석 및 각주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의 부속서 9-나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

(적용대상조달)

2. 이 협정의 목적상, 제 9-가.2조에 각각 정의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하 "BOT 계약"이라 한다)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9-가의 적용을 받지만,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제9.3조

전자적 수단의 이용

1. GPA 제4조제3항에 더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다.

가. 조달예정공고와 요약공고의 공표, 그리고

나. 실행 가능한 가장 넓은 한도에서

1)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조달절차에서 입찰서류의 공표 및 입찰서의 제출, 그리고

2) 조달계획공고와 계약낙찰공고의 공표

제9.4조

조달공고의 전자적 공표

1. GPA 제7조의 요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부속서 9-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음이 인터넷상의 단일 접근 창구를 통하여 무료로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가. 조달예정공고와 요약공고의 공표, 그리고

나. 실행 가능한 가장 넓은 한도에서 조달계획공고와 계약낙찰공고

2. 각 당사국의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가. 주로 영어로,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요약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나.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에서, 제9.4조에 기재된 그 밖의 자료의 공표에 영어를 사용한다.

제9.5조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1. 양 당사국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여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적격성 기준을 포함하여 그 조치가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적용대상조달에 관하여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에서

가. 중소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조달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단일 전자 포털에서 제공한다.

- 나. 모든 입찰서류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다. 적용대상조달을 전자적 수단 또는 그 밖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수행한다.
- 라. 조달기회의 소단위 분할과 중소기업에 의한 공동입찰과 하도급의 이용 증진을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의 규모, 설계 및 구조를 고려한다.
- 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그리고
- 바. 조달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그리고 공급자가 그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도록 노력한다.

제9.6조

환경, 사회 및 노동 고려사항

1.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 가. 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 사회 및 노동 고려사항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고려할 수 있다.
 - 1)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 2)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 3)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적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 나. 자국의 환경법, 사회법 및 노동법,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른 것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행위 규범, 윤리 및 무결성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취해진 조치는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제9.7조
조달관행의 무결성 보장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조달에서 부패, 사기 및 그 밖의 불법 행위를 다루기 위한 형사 또는 행정 조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조치는 부패,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그 당사국이 판단한 공급자들에 대하여, 무기한 또는 명시된 기간 동안 그 당사국 조달에 대한 참가 자격이 없도록 하거나 참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를 적용할 때,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가. 공급자의 작위나 부작위의 중대성 및 모든 구제 조치 또는 감경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 공급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1) 참가 자격이 없도록 하거나 참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2)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공고와 그 결정의 이유

3. 각 당사국은 또한 조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들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가능한 한도에서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낙찰자에게 부패, 사기 및 그 밖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발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영업 윤리 및 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또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9.8조

정부조달 작업반

1.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조달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안을, 적절한 경우와 시기에, 다루기 위하여 회합한다.

-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회부된 정부조달과 BOT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문제의 검토
- 나.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과 BOT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기회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
- 다.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환경, 사회 및 노동 고려사항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우수 관행 교환과 여성의 참여 확대 장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의 전자 조달 플랫폼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포함하여, 정부조달 시스템에서 전자적 수단 이용의 발전 및 확대

제9.9조

추가 협상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접근에 대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비당사국에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부속서 9-가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9-가.1조
적용범위

1. 이 부속서는 15,000,000 특별인출권을 넘는 가액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된다.
2. 한국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GPA 부록 I의 한국 부속서 1 및 2, 그리고 GPA를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BOT 계약,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세종시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¹의 BOT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 영국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GPA 부록 1의 영국 부속서 1 및 2, 그리고 GPA를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²

제 9-가. 2조
정의

1. 한국의 경우,

BOT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

¹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² 이는 이 항에서 위에 언급된 부속서에 더하여 다음의 조달기관을 포함한다.

(1) 남동부 지역 대학 (2) 남서부 대학 (3) 북서부 지역 대학 (4) 북아일랜드 주택공사 (5) 가톨릭계 사립학교 협의회 (6) 경찰 재훈련 및 재활 신탁 및 (7) 메이즈 롱케시(Maze Long Kesh) 개발 공사

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2. 영국의 경우,

CPC란 잠정 중앙상품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77, 국제 경제사회국,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뉴욕, 1991년)를 말한다.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란 사업 시행에 대한 대가가 오로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권리에 있거나 이 권리와 지급에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계약과 동일한 유형의 계약을 말한다.

공공사업 계약이란 CPC 중분류 51의 의미에서의 활동들의 하나와 관련된 사업의 시공이나 설계 및 시공 모두, 또는 수단을 불문하고 계약당국이 명시한 요건에 상응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이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일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건축 또는 토목 사업의 산출물을 말한다.

제9-가.3조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 가능한 규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제9-가.1조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국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자국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2. 제9-가.1조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국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은 국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예정된 계약의 공고

3. 각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제9-가.1조의 적용대상인 예정된 BOT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공고를 부속서 9-다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적인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공고는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무료로, 단일 접근 창구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계약의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예정된 계약의 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조달기관을 접촉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정보
- 나. 계약에 대한 기술
- 다.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주소와 마감일자
- 라. 제출될 수 있는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
- 마.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과 간략한 기술, 그리고
- 바. 계약의 낙찰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

낙찰 공고

4. 부속서 9-가.1의 적용대상인 각 계약의 낙찰 후 적절한 기간 내에, 각 당사국은 부속서 9-다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기관 및 낙찰자의 명칭과 주소를 적시하여 그 계약의 낙찰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재심사

5.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재심사

제도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특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규칙 및 절차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각 당사국이 중소기업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다.

안보 및 일반적 예외

7.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8.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양 당사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조치

부속서 9-나

G P A를 초과하는 시장접근 약속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란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77, 국제 경제사회국,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뉴욕, 1991년)를 말한다.

제1부

한국

제9.2조에 따라, 이 장은 GPA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과 이 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적용된다.

GPA 부록 I에 대한 한국 부속서의 주해는 이 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도 적용된다.

1. 추가 조달기관

가. 세종특별자치시

다음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조달에 대하여

- 1)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하여 400,000 특별인출권, 또는
- 2) 건설서비스 조달에 대하여 15,000,000 특별인출권

2. 추가 서비스

다음 서비스의 조달이 적용대상이 된다.

가. 광고 기획, 제작 및 배치 서비스(CPC 8712)

제1부에 대한 주해

명확성을 위하여, 다음 서비스의 조달은 GPA 부록 I에 대한 한국 부속서 7의 주해 2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

가. 세무 서비스(CPC 863)

나. 사진 서비스(CPC 875)

다. 포장 서비스(CPC 876)

라. 속기 서비스(CPC 87909*)

마.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그리고

바.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CPC 883*)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 대로 “일부분”을 가리킨다.

부속서 9-나

제 2 부

영국

제 9.2 조에 따라, 이 장은 GPA 제 2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과 이 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적용된다.

GPA 부록 I 에 대한 영국 부속서의 주해 및 각주는 이 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도 적용된다.

1. 추가 조달기관

가. 남동부 지역 대학

나. 남서부 대학

다. 북서부 지역 대학

라. 북아일랜드 주택공사

마. 가톨릭계 사립학교 협의회

바. 경찰 재훈련 및 재활 신탁

사. 메이즈 롱케시(Maze Long Kesh) 개발 공사

다음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조달에 대하여

- 1)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하여, 130,000 특별인출권

- 2) 건설서비스(CPC 51) 조달에 대하여, 5,000,000 특별인출권

2. 추가 서비스

GPA 부록 1 에 대한 영국의 부속서 5(그리고 그 주해에 따라)에 열거된 서비스에 더하여, GPA 부록 1 에 대한 영국의 부속서 1 부터 3 까지 또는 이 부의 제 1 항(추가 조달기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에 의하여, 한국이 제공하는 적용범위와의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서비스의 조달

- 가. 세무 서비스(CPC 863)
- 나. 사진 서비스(CPC 875)
- 다. 포장 서비스(CPC 876)
- 라.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 마. 속기 서비스(CPC 87909)
- 바.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CPC 883)

제 2 부에 대한 주해

- 가. 명확성을 위하여, 다음 서비스의 조달은 GPA 부록 1 에 대한 영국의 부속서 5 의 주해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

- 1) 광고 기획, 제작 및 배치 서비스(CPC 8712)

나. 명확성을 위하여, 정부조달장의 제9.2조(적용범위) 및 이 부속서의 제2부는 다음 서비스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1) 인간 건강 서비스(CPC 931)
- 2) 행정 의료 서비스(CPC 91122)
- 3) 간호 인력 공급 서비스 및 의료 인력 공급 서비스(CPC 87206 및 CPC 87209)

3. 고속철도

GPA 부록 1에 대한 영국 부속서 3의 주해 6i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및 고속철도 기간 시설 분야에서 운영되는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은, 한국의 상품 및 공급자에 관하여, 적용대상조달로 여겨진다.

부속서 9-다
정보의 공표

제9.4조에 따라 공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공표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영국의 경우, Find a Tender service”